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규정 삭제 〉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70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내용	3
※ 참고자료	
1.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7

I. 제안경위

2024년 5월 31일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편의점,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등은 업무숙련에 필요한 기간이 통상 1주일 이내로 짧아 ‘수습사용’을 적용하기에 무리한 점이 있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저임금·불안정·단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제5조제2항 삭제).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임(안 제5조제2항 삭제).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최저임금액) ① (생략)	제5조(최저임금액) ① (현행과 같음)
<u>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u>	<u><삭제></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2. 검토내용

현행법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¹⁾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습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 고시된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있는데,²⁾ 이는 수습 개시일부터 3개월간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근로능력이나 숙련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³⁾

동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한 최저임금 금액 규정은 2005년 도입되었고, 2012년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에 따른 임금 감액이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정하여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⁴⁾ 2017년에는 단순노무업무에 대하여는 기능 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순노무업무로서

1)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9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921), 배달원(922),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93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942), 가사 및 육아 도우미(951),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952)),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953),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991), 기계·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992),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999)가 포함됨.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3)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2020), 「근로기준법 주해 III」, p. 18.

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78호, 2012. 7. 1.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등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 사용기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이하 생략)”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⁵⁾

<최저임금 감액 적용 규정 연혁>

연도	감액 적용 대상
1986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인 18세 미만 근로자
2005	①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최대 3개월) ②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2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최대 3개월) ②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7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최대 3개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상점 판매원, 매표원, 매장 계산원, 판촉원 등은 위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 포함되지 않아⁶⁾ 이들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데, 해당 업무는 숙련기간이 매우 짧아 수습기간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음.

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900호, 2018. 3. 20.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사문화된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함.

6)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4(서비스 종사자), 5(판매 종사자)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개정안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수습기간을 둘 필요성이 없거나 요구되는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남용되는 것을 근절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과 같이 직종별로 수습기간의 필요 여부에 관한 구분 없이 수습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수습기간 중 근로자 사이의 노동생산성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의 차등지급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는 견습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사례가 있음.

<견습생 대상 최저임금 감액 사례>

- (미국) 풀타임학생(연방최저임금의 85% 이상), 직업훈련생(75% 이상)
- (일본) 시용(試用)근로자는 최저임금의 20% 이내에서 감액 가능
- (영국) 견습생 대상 별도 최저임금 적용(16~17세 최저임금과 동일액)
- (프랑스) 견습공 및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 감액(6개월 미만의 경력을 보유한 17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10% 감액, 17세 미만인 경우 20% 감액)
- (호주) 수습근로자, 직업훈련생은 특별 최저임금 별도 고시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수습근로자 감액 규정의 적용기간(3개월 이내)과 범위(1년 이상 근로계약자 적용, 단순노무근로자 제외)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 일률적으로 수습근로자 감액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청

년층 등 취약근로자의 고용 위축, 숙련형성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점,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도 견습생 대상 최저임금 감액 적용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감액지급과 관련하여 수습 근로자의 숙련 수준, 업무 능력 등이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감액 적용의 기간(3개월)과 그 한도(최저임금 시급의 90%)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⁷⁾ 해당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조항 삭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0

7) 영국은 2024년 기준 견습생에게 1년간 최저임금(11.44파운드)의 44.1% 감액한 금액(6.4파운드) 지급

참고 1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코드	명칭	코드	명칭
91001	건설단순종사원	94219	그 외 건물 경비원
91002	광업단순종사원	94220	검표원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95110	가사도우미
92102	이삿짐 운반원	95120	육아도우미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5210	패스트푸드 준비원
92210	우편집배원	95220	주방 보조원
92221	택배원	95310	주유원
92229	그 외 택배원	95391	매장 정리원
92230	음식배달원	95392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2291	음료배달원	95399	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2292	신문배달원	99101	농업 단순 종사원
92299	그 외 배달원	99102	임업 단순 종사원
93001	수동포장원	99103	어업 단순 종사원
93002	수동상표부착원	99104	산불 감시원
93003	제품단순선별원	99211	계기 점검원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99212	가스 점검원
94111	건물청소원	99220	자동판매기 관리원
94112	운송장비 청소원	99231	주차 관리원
94119	그 외 청소원	99232	주차 안내원
94121	쓰레기 수거원	99910	구두 미화원
94122	거리 미화원	99920	세탁원 및 다림질원
94123	재활용품 수거원	99991	환경 감시원
94129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9992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94211	아파트 경비원	9999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94212	건물 경비원		